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4. 15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4. 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2. 4. 6.
- 다. 상정일자: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 4. 12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세무1과장 조세원】

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(2022.1.1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(안 제14조의 2)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2022.1.1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, 2022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2일 상정하였음.

-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라 감면해온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.

※ 구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현황

현 행	개 정
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b>150</b> 원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b>500</b> 원	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b>250</b> 원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b>600</b> 원

- 공제 세액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바, 상위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동일 생활권이라는 지역특성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자치단체별 균등한 세액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공제 세액의 확대로 세금의 자동이체<sup>1)</sup>, 전자송달<sup>2)</sup> 등의 이용률이 높아져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 효과와 그에 따른 납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1)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 사서함을 통한 메일로 받거나 모바일을 통해 받고자 신청한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고지함.  
 2)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거래은행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 처리되는 납부 방법

## 【참고자료】

### ■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이체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17. 12. 26., 2021. 12. 28.>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